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2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02. 06.
3. 회 부 일 : 2025. 02. 0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수요처 제공, 자원봉사실적 등록 및 연계 등의 자원봉사활동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인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현 1365자원봉사포털)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19조의2(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하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원봉사관리시스템과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p> |

|                              |           |
|------------------------------|-----------|
|                              | 령령으로 정한다. |
| 부 칙                          |           |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행정안전부가 구축·운영중인 ‘1365자원봉사포털’은 자원봉사 연계, 실적 등록, 활동처 관리 등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의 자원봉사관리시스템임.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 진흥 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sup>1)</sup>, 구체적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 1365자원봉사시스템 개요 ]

- ▶ **(개요)** 모든 분야의 자원봉사에 대한 검색, 신청, 승인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최대 자원봉사포털 시스템([www.1365.go.kr](http://www.1365.go.kr))
- ▶ **(실적)** 등록자수 1,594만명 / 실인원 218만명 / 연인원 1,806만명
- ▶ **(경과)** 시스템구축(‘11), 고도화(‘13), G-클라우드전환(‘17), 데이터기반통합서비스구축(‘19)
- ▶ **(연계)** 13개 기관(공공·민간)의 14개 시스템과 정보 연계

※자료:행정안전부

1)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 지속적 기능 확장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관련 시스템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365자원봉사포털은 2011년부터 운영되어 왔고, 2025년 기준 약 1,594만 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실사용자는 약 218만 명에 달함.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정보시스템(DOVOL) 등 13개 정부·민간기관의 시스템과 자원봉사 실적정보를 연계하여 운영중임.

개정안은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 많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시스템 구축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현재 구축·운영 중인 자원봉사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38 |